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10월 1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정균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위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함(안 제40조의2)
 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장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
 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하여 일반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「평창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았으며, 그 자문결과를 근거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음.

① 먼저, 상정된 조례안의 법령위임 기준이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

- “수의계약”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“원칙적 입찰계약”에 대하여 “예외적 계약방법”에 해당하고 “법령위임 기준”이란, “범위”만 정하는 규정이 아닌 “대상” 및 “조건” 또는 “요건”등을 포괄하는 “법적 성격”임.
- 본 조례안은 예외적 계약방법인 “수의계약”을 대상으로 법적성격인 그 “기준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“조례로 정하는 기준”을 위임한,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함) 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 제1항제28호 전단 중 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”에는 “로서”라는 자격적 조사를 표기하고 있으므로, “적합한 시설”에 관하여

“조례로 정하는 기준”에는 다음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- 첫째, “평창군수가 유치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”
- 둘째, 군수의 유치에 따라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내에 설치하는 기업”
- 셋째, 해당 공장 등의 일정 규모 이상 “종업원<sup>㉠</sup>상시 : 원자재<sup>㉡</sup>조달”이란 “구비요건”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와 같은 세 가지에 관하여 “적합한 기준”을 조례로 정하려는 조례안 “제40조의2”는 “기업의 공장” “범위”만 규정함으로써, 이와 함께 필수적인 “수의계약의 근거 및 대상”,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 구비요건”에 적합한 기준이 누락되어 “법적 흠결”이 상당하다고 판단됨.

② 다음,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

- “①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“수의계약의 근거 및 대상”,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 구비요건”에 적합한 기준이 누락된 “법적 흠결”에 대해서는 “위법성”을 치유(治癒)해야만 해당 조례안은 조례입법의 “합법성 원칙”을 준수하는 적법한 조례로서 개정·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됨.
- 따라서 “수의계약 대상”의 기준은, 군수가 “수의계약”으로 “일반재산”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중, 영 제38조제1항제28호와 동일한 “반복규정”을 피하여 “유치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”이란 규정으로 조례안 “제40조의2”중에 설치해야 적법함.
- 또한,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 구비요건”의 기준은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, “조례로 정하는 기준” 중 필수적 기준 하나가 누락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적합한 “구비요건”을 구체적으로 함께 규정해야 적법하다고 판단됨.

③ 다음,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

- “①” 및 “②”에서 살펴본 대로 조례안 “제40조의2”에는 “본문”의 “기준” 이외에도 두 가지 “적합한 기준”을 추가해야 적법함으로써, 이와 같은 세가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입법의 “체계성 원칙”도 준수하여 “각 항”에 배열해야 할 것임.
- 법령 및 조례에서 세가지 기준을 배열하는 보편적 “입법례”는, “근거 및 대상 ➡ 해당범위 ➡ 조건 또는 요건”의 순서이므로 조례안 “제40조의2”에도 3개의 “항”을 설치해야 조례입법의 “체계성 원칙”을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조례안 “제40조의2”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“수의계약”에 관한 “근거 및 대상”㉠제1항 : 공장 또는 기업의 범위㉡제2항 :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구비요건 ㉢제3항으로 각각 배열해야 한다고 봄.

○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

- 상정된 조례안은 법적 “흠결(欠缺)이 상당하다고 판단됨.  
따라서,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입법의 “합법성 및 체계성 원칙”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 상정된 조례안과 수정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【의결내역】

- 안 제40조의2 “(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)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

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장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
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“을

“(지역경제 활성화 수의계약) ① 군수는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공장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
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
4. 관계 법령에 따라 군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(각 호에서 “계약”이라 한다)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실적이나 갖출 수 있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·확인한 후 그 대상기업으로 결정해야 한다.

1. 계약체결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

가.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,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

나.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 조달한 실적

2.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계획 또는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

3. 그 밖에 군수가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 동의권을 얻은 채무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어 계약체결 이후 제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” 으로 수정하고

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2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40조의2(지역경제 활성화 수의계약)** ① 군수는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공장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
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
4. 관계 법령에 따라 군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(각 호에서 “계약”이라 한다)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실적이나 갖출 수 있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·확인한 후 그 대상기업으로 결정해야 한다.

1. 계약체결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
  - 가.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,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
  - 나.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 조달한 실적
2.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계획 또는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
3. 그 밖에 군수가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 동의권을 얻은 채무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어 계약체결 이후 제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